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의 장

제44호 2018. 10. 12(금)

공고

○남원시 공고 제2018- 1652호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 -----	1
○남원시 공고 제2018- 165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전 열람공고 -----	7
○남원시 공고 제2018- 1658호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	11
○남원시 공고 제2018- 1680호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 -----	24
○남원시 공고 제2018- 1689호 공시송달 공고(2018년 8월 수시분 지방소득세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31
○남원시 공고 제2018- 1691호 공시송달 공고(2018년 9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공시송달 공고) -----	32
○남원시 공고 제2018- 1692호 공시송달 공고(2018년 9월 수시분 자동차세 공시송달 공고) -----	33
○남원시 공고 제2018- 1698호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 입법예고 공고 -----	34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공고 제2018-1652호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44조)

-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0월 25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여성가족과 여성다문화 담당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eunsil0323@korea.kr), 전화(063-620-6213),
FAX(063-620-6744)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여성가족과(☎063-620-62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붙임 :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 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8. 09.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여성가족과장

1. 개정이유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의 연장(안 제44조)

-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양성평등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10. . ~ 2018. 10.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18년 12월 31일</u>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44조(기금의 존속기한) ----- ----- <u>2023년 12월 31일</u>----- ----- . ----- ----- ----- ----- -----.</p>

남원시 공고 제2018-165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전 열람공고

남원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 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원 시 장

2018년 10월 12일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사업명	위치	시설명	등급	노선번호	사업구간	사업량	착수일		시행청	비고
							준공예정일			
교통 대로 개설공사[1구간]	남원시 향교동	도로	대로	1-10	2호광장 향교동 232-9 ~ 향교동 767-1	L=985m B=35m	2018. 6 2020. 12		남원시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남원시장

나.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5. 열람기간 : 도보게재 익일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62)

7. 관계 도서는 남원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끝.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교통 대로 개설공사[1구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시	동					주소	성명	권리자	권리명세	
1	남원	향교	1028-1	구	6,737	595		국(농림축산 식품부)			
2	남원	향교	767-1	답	372	355		남원시			
3	남원	향교	766	답	2,021	1,953		남원시 외1인			
4	남원	향교	766-2	답	797	2		남원시			
5	남원	향교	765	답	1,491	1,491		남원시			
6	남원	향교	768-1	답	937	937		남원시			
7	남원	향교	765-1	답	744	321		남원시			
8	남원	향교	762-5	답	818	812		남원시			
9	남원	향교	762-3	답	971	920		남원시			
10	남원	향교	762-4	답	145	145		남원시			
11	남원	향교	761-2	답	1,722	1,593		남원시			
12	남원	향교	761-3	답	1,443	1,342	인천시북구 계산동348- 12 하나아파트2 3동405호	양*모			
13	남원	향교	759-3	답	685	665		남원시			
14	남원	향교	760-1	답	580	489		남원시			
15	남원	향교	760	종	656	656		남원시			
16	남원	향교	760-2	종	155	155		남원시			
17	남원	향교	314-1	답	1,422	1,354		남원시			
18	남원	향교	1021-1	도	172	92		국(건설부)			
19	남원	향교	759-4	답	12	12		남원시			
20	남원	향교	313-1	답	789	763		남원시			
21	남원	향교	312	대	595	595		남원시외 1인			
22	남원	향교	232-28	철	221	200		남원시			
23	남원	향교	1028-2	구	51	51		국(농림수산식 품부)			
24	남원	향교	1021-2	철	39	39		남원시			
25	남원	향교	307-1	답	73	73		남원시			
26	남원	향교	310-2	답	410	410		남원시			
27	남원	향교	307-2	답	650	650	금동 254-6	양*동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시	동					주소	성명	권리자	권리 명세	
28	남원	향교	308-2	답	50	50		남원시			
29	남원	향교	305-2	구	238	238		국(농림축산 식품부)			
30	남원	향교	306-2	답	242	231		남원시			
31	남원	향교	299-6	답	6	3		남원시			
32	남원	향교	305-3	답	582	578		남원시			
33	남원	향교	232-22	철	9,561	9,561		남원시			
34	남원	향교	302-7	대	268	258		남원시			
35	남원	향교	302-2	구	235	217		국(농림축산 식품부)			
36	남원	향교	301-4	도	425	31		남원시			
37	남원	향교	257-7	도	13	11		남원시			
38	남원	향교	301-2	구	23	14		국(농림축산 식품부)			
39	남원	향교	300-1	도	114	79		남원시			
40	남원	향교	256-1	구	13	13		국 (농림수산부)			
41	남원	향교	257-2	구	205	139		국 (농림축산식품부)			
42	남원	향교	259-2	구	192	138		국 (농림수산부)			
43	남원	향교	258-5	답	28	12		국 (농림수산부)			
44	남원	향교	258-1	구	7	0.1		국 (농림수산부)			
45	남원	향교	261-2	구	205	145		국 (농림수산부)			
46	남원	향교	258-3	답	22	14		국 (농림수산부)			
47	남원	향교	263-2	구	298	218		국 (농림수산부)			
48	남원	향교	265-3	구	159	127		국 (농림수산부)			
49	남원	향교	265-5	도	828	6		남원시			
50	남원	향교	232-7	도	256	267		남원시			
51	남원	향교	232-19	철	13	13		남원시			
52	남원	향교	232-21	대	439	439		남원시			
53	남원	향교	232-29	대	699	658		남원시			
54	남원	향교	247-9	대	175	171	전주시완산 구홍산로390 ,104동603 호 (효자동3가,	하*수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시	동					주소	성명	권리자	권리 명세	
							서부신시가 지아이파크)				
55	남원	향교	265-1	도	1,434	321		국(건설부)			
56	남원	향교	232-10	도	253	253		남원시			
57	남원	향교	266-2	도	680	680		국(건설부)			
58	남원	향교	232-11	도	435	435		남원시			
59	남원	향교	232-26	대	50	50		남원시			
60	남원	향교	267-16	도	34	25		국(건설부)			
61	남원	향교	246-4	도	67	59		국(건설부)			
62	남원	향교	246-3	도	383	207		남원시			
63	남원	향교	232-23	도	296	296		남원시			
64	남원	향교	247-8	대	4	4		남원시			
65	남원	향교	247-7	도	23	23		남원시			
66	남원	향교	232-34	철	568	395		남원시			
67	남원	향교	232-17	철	503	311		남원시			
68	남원	향교	232-25	철	31	31		남원시			
69	남원	향교	232-18	도	971	745		남원시			
70	남원	향교	245-2	도	228	228		국 (기획재정부)			
71	남원	향교	245-4	도	207	207		국(건설부)			
72	남원	향교	944-4	도	939	95	쌍교리 212	경주김씨 성민공중종			
73	남원	향교	244-8	구	56	15		국 (농림수산부)			
74	남원	향교	244-5	도	50	39		국 (기획재정부)			
75	남원	향교	178-2	도	1,376	8		국(건설부)			
계			75필지		48,592	34,728.1					

남원시 공고 제2018-1658호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08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조례 규칙 규제개선과제 및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규정 및 영조물을 이용하면서 지자체와 주민간의 관계에서 손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규정으로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예고기간 : 2018. 10. 08 ~ 2018. 10. 28(20일)

3. 주요내용

- 가. 사용허가의 취소 등 규정 삭제 (안 제5조)
- 나. 사용료 감면 규정 개정 (안 제12조)
- 다. 위탁관리 규정 개정 및 위탁기간 등 상위법령과 중복 규정 삭제(안 제17조)
- 라.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자 전부책임 규정 삭제 (안 제20조제3항)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붙임 :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8. 10. .
 제출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교육체육과장

1. 개정이유

「법제처」조례 규칙 규제개선과제 및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로 공공체육 시설 사용료 감면규정 및 영조물을 이용하면서 지자체와 주민간의 관계에서 손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규정으로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용허가의 취소 등 규정 삭제 (안 제5조)
- 나. 사용료 감면 규정 개정 (안 제12조)
- 다. 위탁관리 규정 개정 및 위탁기간 등 상위법령과 중복 규정 삭제(안 제17조)
- 라.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자 전부책임 규정 삭제 (안 제20조제3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10. . ~ 2018. 10. .(20일간)
 - 결 과 :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초등학생 또는 7세”를 “7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중·고등학생 또는 14세”를 “14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20세”를 “19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12조 제1항제1호 중 “도·시가 직접 주관하는 경기·행사”를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제1항제1호”로 한다.

제15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 제1항 중 “법인·단체에”를 “법인 및 개인·단체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0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4조 제목 “(준용)”을 “(준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시행령”을 “시행령을 따르고,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 현황(제2조 관련)

명 칭	세부시설	소재지
종합운동장	축구경기장, 육상경기장	남원시 충정로 341
춘향골체육관	실내체육관	남원시 충정로 341
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축구경기장, 족구장, 풋살장	남원시 이백면 이백로 333
롤러경기장	트랙, 로드경기장	남원시 충정로 341
춘향골다목적구장	실내체육관	남원시 충정로 341
인공암벽장	실외암벽장	남원시 충정로 341
춘향골테니스장	실외테니스장	남원시 충정로 341
다목적 롤러하키장	실내구장(막구조)	남원시 충정로 341
신준섭 복싱체육관	실내체육관	남원시 만인로 41-51
육면 테니스장	실외테니스장	남원시 만인로 41-51
관덕정	국궁장	남원시 소리길 122-23
황산정	국궁장	남원시운봉읍 근화동길 74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단위:원)

구 분	기준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비 고	
		평일 주간	공휴일 및 평일야간	평일 주간	공휴일 및 평일야간		
종합 운동장	축구경기장	1회 3시간	30,000	40,000	60,000	80,000	1. 1회 기준 : 3시간 - 춘향골 다목적구장, 춘향골 테니스장, 인공암벽장, 풋살장, 롤러경기장 별도 ※춘향골다목적구장 공휴일 야간 사용료는 공휴일 주간사용료의 20%가산 2. 초과사용료 가산 - 1시간 이하 초과사용료 기본사용료 50%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료 기본사용료 100%가산 3. 종합운동장 축구장 마킹은 사용자측에서 이행한다. - 장비 무료 대여 4. 주간 : 09:00~18:00 야간 : 18:00~22:00 ※인공암벽장은 별도운영 - 12월~3월 · 화요일~일요일 10:00~19:00 - 4월~11월 · 화요일~금요일 10:00~21:00 · 토요일~일요일 10:00~19:00 5.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별도 부과(별표 3기준)
	육상경기장	1회 3시간	15,000	20,000	25,000	30,000	
춘향골 체육관	실내체육관	1회 3시간	80,000	100,000	150,000	200,000	
춘향골 다목적구장	1면당 2시간 (조명료 포함)	20,000	25,000	체육경기외 대여 불가			
춘향골 테니스장	1면당 2시간	6,000	8,000				
인공암벽장	전용사용료 (1일 기준)	50,000	70,000				
	1회2시간	2,000	2,500				
문화 체육 센터	축구경기장	1회 3시간	30,000	40,000			1.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별도 부과(별표 3기준) 2. 체육경기 외 대여불가
	족구장	1회 3시간	7,000	10,000			
	실내체육관	1회 3시간	30,000	40,000			
		배드민턴 월정사용료 (1일 1회 3시간)	300,000				
	풋살장	1회 2시간	어린이 무료	청소년 무료	일반 10,000		
롤러 경기장	구분		어린이	청소년	일반		1.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별도 부과(별표 3기준) 2. 체육경기 외 대여불가
	트랙, 로드	월정회원 (주간)	10,000	15,000	20,000		
		월정회원 (야간)	15,000	20,000	25,000		
	1회 3시간	평일주간	40,000		공휴일 및 평일야간 50,000		
다목적 롤러하키장	1회 3시간	평일주간	40,000		공휴일 및 평일야간 50,000		1.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별도 부과(별표 3기준) 2. 체육경기 외 대여불가

[별표 3]

체육시설 부대사용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사용기준	기본료		※ 비 고	
춘향골 체육관	조명	1회	실내조명	80,000	1. 1회 기준 3시간 2. 1회 초과 시 1시간당 실내조명 15,000원, 냉·난방 20,000원 추가 3. 무대조명, 전기, 음향 1회 기준 1일 4.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무대조명	80,000		
	음향	1회	30,000			
	냉·난방	1회	40,000			
	전기	1회	20,000			
종합운동장	조명타워	1회3시간	120,000		1. 조명타워 1회 기준 초과 시 - 1시간 이하 초과사용료 기본료 20%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료 기본료 50%가산 2. 전기, 음향 : 1회 기준 1일 3.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전기	1일1회	20,000			
	음향	1일1회	20,000			
춘향골 다목적구장	전기	1일1회	20,000		1. 전기, 음향 : 1회 기준 1일 2.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음향	1일1회	20,000			
춘향골 테니스장	조명	1회	4,000		1. 1회 기준 2시간	
인공암벽장	전기	1일1회	20,000		1. 전기 1회 기준 1일	
문화 체육 센터	실내조명		1회	30,000	1. 1회 기준 3시간 2. 1회 초과 시 1시간당 실내조명 10,000원, 냉·난방 15,000원 추가 3. 전기, 음향 1회 기준 1일 4.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5. 조명타워 1회 기준 초과 시 - 1시간 이하 초과사용료 기본료 20%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료 기본료 50% 가산	
	조명 타워	축구	1회	40,000		
		족구	1회	15,000		
	냉·난방		1회	20,000		
	음향		1회	20,000		
	전기		1회	20,000		
롤러 경기장	조명 타워	트랙	1회	30,000		
		로드	1회	15,000		
	전기		1회	20,000		
다목적 롤러 하키장	실내조명		1회	20,000		
	전기		1회	20,000		
탁자		1개	1,000			
의자		1개	200			
샤워장		1인1회	2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어린이"란 <u>초등학생 또는 7세 이상 13세 이하인</u> 사람을 말한다.	5.----- <u>7세</u> ----- ----- -----.
6."청소년"이란 <u>중·고등학생 또는 14세 이상 19세 이하인</u> 사람을 말한다.	6.----- <u>14세</u> ----- ----- -----.
7."어른"이란 <u>20세 이상</u> 의 사람을 말하며, <u>65세 이상</u> 의 사람은 경로자로 본다.	7.----- <u>19세</u> ----- ----- -----.
8."공휴일"이란 「 <u>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u> 」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8.----- 「 <u>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u> 」----- -----.
9. · 10. (생략)	9. · 10. (현행과 같음)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u>시장</u>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u>	<삭 제>
1. <u>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u>	
2. 제10조제1항에 따른 <u>사용료</u>	

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체육시설 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도·시가 직접 주관하는 경기·행사

2. 남원시의 대표선수단 훈련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4. ~ 8. (생략)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

-----.

1. -----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삭 제>

<삭 제>

4. ~ 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

의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5조(손해배상) ① (생략)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모든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7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체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위탁업무 수행) ①·② (생략)

③ 수탁자는 사업수행에 따른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사건·사고에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절차 및 방법 등에 관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손해배상) ① (현행과 같음)

<삭제>

제17조(위탁관리) ① -----

----- 법
인 및 개인·단체에게 -----
-----.

<삭제>

제20조(위탁업무 수행)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제24조(준용 등) -----

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 시행령을 따르고,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남원시 공고 제2018-1680호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법제처 조례규제 개선사례 50선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 지역을 확대하고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취약지역 영유아 보육지원이 균형 있게 지원되도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을 포함 (안 제12조).

나. 상위법령에 맞게 위탁취소 조항을 개정 (안 제2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0월 30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 담당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s6073779@korea.kr), 전화(063-620-6216),
FAX(063-620-6744)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여성가족과(☎063-620-62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붙임 :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8. 09.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여성가족과장

1. 개정이유

법제처 조례규제 개선사례 50선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 지역을 확대하고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취약지역 영유아 보육지원이 균형 있게 지원되도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을 포함 (안 제12조).
- 나. 상위법령에 맞게 위탁취소 조항을 개정 (안 제2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09. . ~ 2018. 10. .(20일간)
 - 결 과 :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30조 중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과”를 “「영유아보육법」등을 따르고,”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설치) ①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설치할 수 있다. <u>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u></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21조(설치) ① ----- ----- ----- ----- <u>.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u> 2. <u>「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u> 3. <u>「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u>
<p>② (생략)</p> <p>제25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5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u>「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u></p>

는 시장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1. 거짓으로 신고하여 지정받은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시설물 및 그 밖의 재산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3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과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0조(준용) -----
----- 「영유아보육법」 등을 따르고,

-----.

남원시 공고 제2018 - 1689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18년 8월 지방소득세 독촉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감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0. 12

남 원 시 장

- 1. 제 목 : 2018년 8월 수시분 지방소득세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2. 공고기간 : 2018. 10. 12 ~ 2018. 10. 26
- 3. 납부기한 : 2018. 10. 31
- 4. 공시송달내용

2018년 8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독촉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등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며, 공시송달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고지서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5. 공시송달내역 : 붙임 (단위:원)

납세번호	납세자번호	개인(법인)명	세액	공고사유	간주납기
140001 2018 08 2 560 001708	680618-***** **	신**자	454,610	폐문부재	20181031

남원시 공고 제2018 - 1691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18년 9월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0. 12

남 원 시 장

- 1. 제 목 : 2018년 9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공시송달 공고
- 2. 공고기간 : 2018. 10. 12 ~ 2018. 10. 26
- 3. 납부기한 : 2018. 10. 31
- 4. 공시송달내용

2018년 9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며, 공시송달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고지서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5. 공시송달내역 : 붙임

(단위:원)

납세번호	납세자번호	개인(법인)명	세액	공고사유	간주납기
140002 2018 09 2 570 000133	790324-*****	이**일	9,780,860	폐문부재	20181031

남원시 공고 제2018 - 1692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18년 9월 자동차세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반송함투함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0. 12

남 원 시 장

- 1. 제 목 : 2018년 9월 수시분 자동차세 공시송달 공고
- 2. 공고기간 : 2018. 10. 12 ~ 2018. 10. 26
- 3. 납부기한 : 2018. 10. 31
- 4. 공시송달내용

2018년 9월 수시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반송함투함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며, 공시송달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고지서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5. 공시송달내역 : 붙임

(단위:원)

납세번호	납세자번호	개인(법인)명	세액합계	공고사유	간주납기
106001 2018 09 2 570 004522	630215-*****	신**숙	22910	반송함투함	20181031
106001 2018 09 2 570 004541	630908-*****	진**출	48580	반송함투함	20181031

남원시 공고 제2018 - 1698호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 입법예고

2018. 10. 12

남 원 시 장

1.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고나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2. 읍면동장은 행정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널리 홍보 될 수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시면, 2018.10.22일까지 의견제출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나. 예고기간 : 2018.10.12~2018.10.22(10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1.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1부.

2. 의견제출서1부. 끝.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안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8. 10.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경 제 과 장

1. 폐지이유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농공단지 조성사업 완료 및 존속기한 만료로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 나.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2018년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남원시 일반회계로 귀속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10. . ~ 2018. 10. . (10일간)
 - 결 과 :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남원시 일반회계에 귀속된다.

②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2018년 회계연도의 결산잉여금은 남원시 일반회계로 귀속한다.